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상훈 · 김위상
최보윤 · 이현승 · 최수진
정동만 · 김미애 · 김민전
박수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~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살인·강도·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,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.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,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

10년으로 뚝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제6조의2).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5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6조의2제1항 중 “제7호의4”를 “제7호의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7호의4”를 “제7호의5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7호의4”를 “제7호의5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③ (생 략)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
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
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
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
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
까지,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
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
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제7호의5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